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강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17. 10. 16)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 제안이유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제16조 제2항이 2003년에 개정되면서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유통산업발전법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8. 23. ~ 2017. 9. 1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강희순)

본 폐지조례안은 2003. 7. 30. 전부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기시장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고,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관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임시시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11. 06. 30.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정기시장은 존치 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 2016.12.2.] [법률 제14365호, 2016.1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15.11.20.>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10.6.8.]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96. 5.27 조례 제357호]

개정 1999. 1.12 조례 제436호

(일부개정) 1999.11.15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6.30 조례 제881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 : 2600-62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 1.12)

1.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1999. 1.12)

제4조(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하 "계절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1.12)

②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 1.12)

1. 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
(개정 1999. 1.12)
2. 급수시설·배수시설·위생시설(화장실·오물처리장), 소방시설, 소비자 피해보상 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1.15)

③계절시장의 개설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유지인 경우 사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3. 도로부지의 경우는 간선도로에서 50미터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 ④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계절시장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등의 개설자(개정 1999. 1.12)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3. 농지 경작자(자경증명서, 농지원부 제출자) (신설 1999.11.15)
 4.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 등의 개설허가자가 취소된 때
 2. 제4조제2항의 시설기준에 미달될 때
 3. 계절시장 개설 지정후 1개월 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
 4.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6조(정기시장 등의 운영·관리 등) ①구청장은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③지정받은 시장관리인이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11.15)
1. 삭제 (1999.11.15)
 2. 삭제 (1999.11.15)
- ④구청장은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및 임시시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휴업 또는 폐업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2)

제7조(시장개설자의 책무) ①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2)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
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의 지도
5.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
6.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정기시장 및 임시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 1.12)

제8조(관리비 등의 징수) ①구청장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관리인·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동 시장의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지·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정기시장 등의 개설대장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